

웅지세무대학교	학생자치기구규정	문서번호	5-3-01(E)-0
		제정일자	21.01.11.
		최근개정	-
		주관부서	교학처 학생지원실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들(이하 “자치기구”라고 한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결속을 강화함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자치기구의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자치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학생총회는 학생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최고의결기구를 말한다.
2. 총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총학생회장·부회장과 집행부로 구성되는 자치기구를 말한다.
3.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전대 총학생회로부터 원활한 인수를 위해 당선인이 임시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대의원회는 학부(과)대표 및 자치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심의의결기구를 말한다.
5. 대의원회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비와 관련된 모든 자치기구 감사를 위해 임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대표 선거와 학생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학부(과)대표는 각 학부(과)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 전공별로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되는 자치기구를 말한다.
8. 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 구성되는 자치기구를 말한다.
9. 생활관자치회는 생활관 내 입주생들의 생활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기구를 말한다.
10. 도서관자치회는 도서관 관리업무 및 자기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자치기구를 말한다.

제3조(자치기구별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각 자치기구의 회원들은 총학생회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자치기구의 신설·폐지) 총학생회와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학생자치기구 지원부서가 협의하여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조에 따른 자치기구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는 총학생회의 제청을 받아 제4조에 따른 부서가 발의하고 대학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부 칙 <1판-제정 2021.01.11.> <시행/공포 202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구성된 자치기구는 이 규정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기존 총학생회규정·총학생회선거규정·동아리운영규정을 폐지한다. 기존 총학생회규정은 이 규정이 대체한다.